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김성우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○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정(시행 중)과 관련하여 우선 조례안을 제정하여 성주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및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2조)
나.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~제5조)
다. 상품권 가맹점 지정절차 및 요건, 취소요건 규정(안 제6조~제7조)
라. 판매대행점, 사용자, 운영대행사의 준수사상(안 제8조~제10조)
마. 상품권의 환전, 할인 및 환불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3조)
바. 상품권의 활성화 시책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~제1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○ 기　　타 : 조례안예고(2019. 8. 26 ~ 2019. 8. 30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발행 및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주사랑 상품권의 확대 방안 마련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